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43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김성원

이인선 · 조배숙 · 이양수

김기웅 • 이헌승 • 박충권

임이자 • 고동진 • 김도읍

서지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

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을 "정부납부기술료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을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5의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정부납부기술료"란 연구개
	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u>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u>
	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	
<u>유기관"이라 한다)은</u> 연구개발	
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	

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 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 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 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 ⑥ (생 략)

-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지 ① (생 략)
 -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 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저 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 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u>.</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2
<u>정</u>
부납부기술료를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①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 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 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 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 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 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 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생략)
- ② ~ ⑥ (생 략)

<u>.</u>
1. ~ 4. (현행과 같음)
5
<u>따라 정</u>
부납부기술료를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